

1. 개정이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대상자 신분을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에서 보건진료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진료직렬의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로 「지방공무원법」 제36조 제7항에 따른 실무수습 중인 사람으로 명시 함으로써 직무교육 대상자의 신분보장(4대보험, 보수, 경력 등) 및 직무교육과정 중 보건진료소 현장에서의 의료행위 실습 등 직무상 행위에 따른 교육훈련 안전보장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대상자를 선발할 경우 직무교육 대상자를 보건진료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진료직렬의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로 「지방공무원법」 제36조 제7항에 따른 실무수습 중인 사람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12.1. ~ 2023.1.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본문 중 “보건진료직렬의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를 “보건진료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진료직렬의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로 「지방공무원법」 제36조 제7항에 따른 실무수습 중인 사람”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직무교육) ①~③ (생 략)	제19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직무교육)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계획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u>보건진료직렬의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u> 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대상자로 선발하여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 ----- ----- <u>보건진료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진료직렬의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로 「지방공무원법」 제36조 제7항에 따른 실무수습 중인 사람</u> ----- -----.
다만, <u>보건진료직렬의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u> 만으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충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진료직렬이 아닌 공무원 중에서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의 신청을 받아 해당 공무원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 <u>보건진료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진료직렬의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로 「지방공무원법」 제36조 제7항에 따른 실무수습 중인 사람</u> ----- -----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